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515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 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9. 3. 3. 체결된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3,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차전23075양수금 사건에서 2013. 5. 28. "D는 원고에게 16,024,637원 및 그 중 4,170,499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D의 재산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2019. 3. 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F, 자녀들인 피고, D, G이다.

2) 피고와 F, D, G는 2019. 3. 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 6.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채권최고액 33,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동주택 공시가격)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인 D가 자기의 유일한 재 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2/ 9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배상을 구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 2. 9. 선고 2000다57139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중 D의 상속분 상당액과 원 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그 시가 상당액은 2019. 1.1. 당시의 시가인 60,000,0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그 2/9상당액은 13,333,333원(= 60,000,000원 X 2/9)인 반면에,피보전채권액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2/9상 속분의 시가 상당액을 상회한다.

3)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고상영

별지